

[붙임]

## 지스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   |  |
|---|--|
| <b>정보공개법<br/>제9조제1항제1호</b>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li><li>2.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li><li>3.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li><li>4.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li><li>5.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li><li>6.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li><li>7.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징수법 제7조의제2 제3항)</li><li>8.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li><li>9.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li></ol> |  |

|   |   |
|---|---|
| <b>정보공개법<br/>제9조제1항제2호</b>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li><li>2.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충무계획 등 보안과 관련된 정보</li><li>3.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li><li>4. 을지훈련, 재난대응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li></ol> |   |

|   |   |
|---|---|
| <p><b>정보공개법<br/>제9조제1항제3호</b></p>   | <p>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li> <li>2.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li> <li>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li> <li>4. 기관 시설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li> </ol> |   |

|  |  |
|--|--|
| <p><b>정보공개법<br/>제9조제1항제4호</b></p>  | <p>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li> <li>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li> <li>3. 임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 사건 처리 관련 정보</li> <li>4.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li> <li>5.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 신청 사건의 정보</li> </ol>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과정의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과정·세부결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성된 문서 및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할 수 있는 정보
3. 계약 및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로서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선정 및 협약·계약 체결 과정에 관계된 내용
4. 계약 및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로서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에 관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세부점수 및 과제별 평가위원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7.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확정되거나 발표·출판되지 않은 사항이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8. 확정되지 않은 사업수행 계획 및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9.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입안 및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과의 협의·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1.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임용·평가·승진·징계·교육·훈련·급여내역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12. 각 위원회·협의회의 회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 및 위원명단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13. 조직 및 직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14.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중 의사결정·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노사간의 공정한 교섭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정보공개법<br/>제9조제1항제6호</b></p> | <p>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함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p>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의 민감함 정보</li> <li>2. 감사·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li> <li>3. 기관과의 거래 상대방, 간담회 참석자, 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li> <li>4. 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li> <li>5.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li> <li>6.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li> <li>7.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li> <li>8.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르며,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li> </ol>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정보공개법<br/>제9조제1항제7호</b></p>   | <p>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li> <li>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li> <li>3. 법률자문 관련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li> <li>4.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 과의 계약 정보</li> </ol>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정보공개법<br/>제9조제1항제8호</b></p>   | <p>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등</li> </ol> |  |